

제218차 임시이사회 안건집

제안자	(사)한국음반산업협회장
제안일	2025. 08. 18.(월)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순 서

1. 개회선언

2. 국민의례

3. 의장인사

4. 전차 이사회 의결사항

5. 주요 업무보고
   ㈜채리소프트 특허 침해 주장 관련 경과사항
   김○○ 前 전무이사의 전무이사 지위 확인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과
   국제저작권법학회 한국지부 주최 학술세미나 후원, 개최의 건

6. 부의 안건
   의안 제01호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의 건
   기타사항

7. 진행 및 예정사항

전차 이사회(제217차) 의결사항

1. 개 요

가. 일　　시 : 2025. 06. 18.(수) 14:00

나. 재적이사 : 10인

다. 출석이사 : 10인

- 이사(10인) : 최경식(의장), 김광, 김성일(박영석 대리), 김종우(서대경 대리), 김희성, 서판석, 시성웅, 전상욱(이광용 대리), 이영웅, 임두빈
- 감사(2인) : 이준, 한용진

2. 주요 업무보고

가.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점검 결과 및 개선명령 수신 보고

나. ㈜채리소프트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한 주요사항

다. 협회 신탁회원(최○○) 내용증명 수신의 건

라.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투명성 확보 방안 학술세미나 참석 보고

마. (사)한국인터넷신문협회 업무협약 보고

3. 의안심의

의안 제01호 사무처 직제 및 업무분장 규정 개정의 건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처 직제 및 업무분장 규정을 개정하는 원안에 대하여 출석이사 전원의 반대로 부결함

의안 제02호 신규신탁 확대를 위한 입회비 면제의 건

신규신탁 확대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20대(1996~2005년생) 제작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입회비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원안에 대하여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함

주요 업무보고

1. ㈜채리소프트 특허 침해 주장 관련 추가 경과사항

※ 비공개

2. 김○○ 前 전무이사의 전무이사 지위 확인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과

가. 사건명 : 서울서부지법 2025카합50032 방해금지 가처분

나. 채권자 : 김○○ 前 전무이사

다. 채무자 : 최경식 회장

라. 결과 : 각하 및 기각 결정(김○○ 前 전무이사 패소)

마. 가처분 판결 내용

1) 전무이사 지위 확인 부분에 대하여 각하

- 회장에 대한 협회 전무이사 지위 확인 구하는 부분은 이익이 없어 각하

2) 전무이사 사임 효력은 유효

- 김○○은 사임서를 협회 대표자에게 교부하여 도달하였고, 사임의 효력을 부인할 사정이 없으므로 사임의 효력은 유효.

3) 사임 과정에 사임을 강요 및 협박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각

4) 회장의 법인인감 보관, 회장의 인사권 행사 등에 대해 금지 청구는 전부 기각

3. 국제저작권법학회 한국지부 주최 학술세미나 후원, 개최의 건

가. 학술세미나 후원, 개최 배경

- 방송사의 무분별한 커버 음원 제작 및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원곡 제작자와 가수가 겪는 피해 문제와 함께 AI시대에 대한 준비, 저작권 침해 범죄 양형기준 상향 등을 심도 있게 다루고자 국제저작권법학회 한국지부 주최의 학술세미나를 후원하고 개최를 지원함

나. 학술세미나 개요

- 주제 : AI 시대의 음원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과 과제
- 일시 : 2025. 08. 13.(수) 14:00 ~ 18:00
- 장소 : 서울경제진흥원 2층 SBA홀(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 주최 : 국제저작권법학회 한국지부(ALAI Korea)
- 후원 :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다. 세미나 주제 및 일정

- 다음페이지 참조


ALAI Korea 2025학술세미나
AI 시대의 음원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과 과제
2025년 8월13일 (수) 14:00-18:00 | 상암동 서울경제진흥원 2층 SBA홀
세미나 일정
시간 내용 사회: 강기봉 교수(서강대학교)
13:30~14:00 등록접수
14:00~14:15 개회사 김경숙 회장(ALAI Korea)
축 사 박정렬 원장(한국저작권보호원)
환영사 최경식 회장(한국음반산업협회)
이정현 회장(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14:15~14:20 기념촬영
01. 방송사의 커버 음반 발행과 음반제작자의 권리 좌장: 오승종 변호사(전 홍익대학교 교수)
14:20~15:20 발 제 임원선 교수(성균관대학교)
토론1 이일호 교수(연세대학교)
토론2 김현부 교수(백석예술대학교/이레뮤직 대표)
휴식 (15:20~15:40)
02. AI 시대의 음원 저작권 침해 유형과 법적 대응 좌장: 박준우 교수(서강대학교)
15:40~16:40 발 제 한지영 교수(조선대학교)
토론1 정태호 교수(경기대학교)
토론2 김형지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03. 저작권 침해 범죄 양형기준 상향 관련 쟁점 및 대응방향 검토 좌장: 차상육 교수(경북대학교)
16:40~17:40 발 제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토론1 박성민 교수(경상대학교)
토론2 신창환 변호사(법무법인 린)
폐 회
주최 | ALAI Korea (대한민국 국제저작권법학회)
후원 |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대한민국국제저작권법학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음반산업협회
Federation of Korean Music Performers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의 안 심 의

의안 제01호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의 건

의안 제01호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의 건

1. 의결주문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의 건을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주문함

2. 제안설명

가. 개정 사유

(1) 구글이 2022년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배포되는 모든 앱에 대해 자체 결제시스템(인앱결제, In-App Billing)을 의무화하고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강제로 시행함에 따라, 사업자의 중재 요청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됨

(2) 사업자와 권리자 간의 의견 조율이 원활하지 않아,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부) 의 중재를 통해 2022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4년간) 한시적으로 인앱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료 징수규정 부칙이 신설됨

→ 구글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멜론 1개월 사용권을 8,700원으로 구입시 인앱수수료를 일부 공제하고 **7,900원 (동일상품 PC 결제시 금액)으로 정산함**

플랫폼	상품명	상품 금액	
		PC 가격	APP 가격
멜론	스트리밍클럽 정기결제	7,900	8,700
지니	음악감상	8,400	8,900
플로	무제한 듣기	8,000	9,000
벅스	무제한 듣기	7,900	8,700
바이브	무제한 듣기	8,000	8,454



최신뉴스

인앱결제 대응 음원 저작권료 상생안 2년 연장된다

송고 2024-06-11 09:17

이태수 기자
+ 구독

문체부 설득에 한음저협 동의…"플랫폼·권리자 단체 상생 도모"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에 대응하고자 도입된 '음원 저작권료 상생안'이 2년 연장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국내 음원 플랫폼 업체들의 저작권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상생안을 2년 연장하는 데 동의했다고 11일 밝혔다.

(3) 문체부는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는 규정 적용을 위해, 권리자 단체에 문체부가 마련한 중재안을 기본으로 한 징수규정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함

→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 간 매출액 적용기준 및 할인적용 비교표 (현행)

구분	국내사업자 (멜론, 지니, 플로 등)	해외사업자 (유튜브,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등)
매출액	총매출	순매출
매출액 적용기준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전체 금액	총매출에서 수수료, 환불, 세금, 인앱수수료 등 공제 항목을 차감한 실제 금액
가족(할인) 상품	미제공	제공 (유튜브는 국내 미제공)
할인 프로모션	할인율 미적용	할인율 적용

(4) 사무처는 권리자의 권익 보호 노력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가 참석한 전문가 회의를 진행하여 개정(안)을 마련함

나. 매출액 적용기준 변경 및 할인 적용 반영을 위한 요율 변경(안)

- 권리자(음반제작자+저작권자+실연자) : 65% -> 68.42%
- 사업자(멜론,지니 등) : 35% -> 31.58%

구분	사용료 수수료율		가입자당 단가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음산협	**48.25%**	**50.79%**	**3,080원**	**3,811.75원**
음실련	6.25%	6.58%	420원	493.75원
음저협/함저협	10.50%	11.05%	700원	829.50원
총합	65.00%	68.42%	4,200원	5,135.00원

- 사업자 측에 보다 정확한 데이터 제공을 필수조건으로 지속 요청 중
- 개정(안) 적용 시, 현행 사용료와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의 징수 금액이 예상됨
- 단, 개정(안) 시행을 2026년 6월 부터로 제출하여 매출감소를 최소화 하고자 함
- 개정(안) 적용 가입자가 증가할 경우 사용료 요율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할 수 있음

3. 주요 내용

가. 개정 내용

(1) 제4조의 2 (가입자당 단가, 음악사용료율, 매출액 정의) 수정

- 가입유치를 위한 할인 상품 도입을 대비하여 “가입자당 단가” 상향 조정
- 권리자 수익 수준이 현행과 유사하게 유지되도록 “사용료 요율” 상향 조정

(2) 제5조의 3 (판매촉진 등)

- 현재 해외사업자가 판매 중인 할인 상품과 유사한 할인 항목 예시를 명시함
- 할인율은 권리자(협회)가 사용자와 협의하여 부여하도록 규정함
- 사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항목을 추가함

(3) 제12조 (결합서비스의 사용료)

- 2개 이상의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예: 유튜브의 영상 재전송 + 음악 스트리밍 등)에 적용 가능한 징수 규정을 신설하여, 결합형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 하고자 함

(4) 제13조 기타사용료 , 제 13조의 2 (상호협의 등 관련보칙)

- 해당 조항을 적용한 이용허락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보고 및 관련 규정 개정안 제출기한을 명확히 명시하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의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공통 시정요구 및 개정안 제출 요청사항 반영하여 관련 조항 추가함

[별지 1.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신구대비표 및 전문]

4. 심의

기타사항

진행 및 예정사항

1. 복지위원회 개최

가. 개최 시기 : 2025년 9월 중

나. 내용 : 2025년 하반기 원로회원복지금 지급 등 안건 심의 예정